



- ○○○ 소송결과에 따른-
○○○ 처분계획 보고



2014.11.27. 대법원 ○○○ 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처분계획입니다.

□ 위법행위 내용

- 용역계약 상대방이 이해관계인 임에도 불구하고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시행세칙 제8조1항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을 위반 함

-○○○○○용역계약 내역

용역기관	용역명	계약방식
○○○연구소	○○○○○문화재 발굴조사	1인 수의계약
○○○연구소	○○○○○발굴조사	1인 수의계약
○○○연구소	○○○○○발굴조사	1인 수의계약
계		

※○○○○○연구소 : 대표 ○○○(이해관계자)

- 감사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○○○은 관계규정에 따라 상사에게 사전 보고하였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직근 상급자(2인)에게 재확인결과 “보고받은 기억이 없다”고 진술 함
- 또한 문답서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는 계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점으로 볼 때 “사전보고 주장”을 감사 당시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

- 허위 출장신고를 하고 ○○○연구소 개소식, ○○○연구원 사무소, ○○○연구원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여비 32,400원을 부당하게 수령

※ “○○○ 현황조사 관련 업무협약”로 출장 결재 후 개소식 참석

- 직무관련 기관인 위 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면서 경기도시공사 ○○○팀 명의로 각각 5만원 상당의 화분(동양란)을 부당하게 제공
- 「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」 제12조(이권개입 등 금지)“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”

□ 관련규정

- 우리공사 취업규정 제6조(성실의무) 및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6조(공정한 직무수행)에 따르면 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
- 또한,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8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에 “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고
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」 제12조(이권개입 등 금지)“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” 규정되어 있음
- 아울러 상기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와 동 규정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에 의거하여 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

□ 위반 및 징계, 처벌규정

○ 위반규정

- 취업규정 제6조(성실의무)
-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6조(공정한 직무수행)
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8조(이해관계 직무회피)

○ 징계 및 처벌규정

-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
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36조(징계)

□ 신분상 처분계획

- 취업규정 제6조(성실의무) 및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6조(공정한 직무수행) 규정에 따라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
- 행정○급 ○○○은 취업규정 제6조(성실의무),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6조(공정한 직무수행)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8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를 위반하였음.
- 이에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에 따라 정직처분을 요구 함